

제3030호
2023. 10. 5.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3-896호 :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9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 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의 적용 범위(안 제3조~제4조)
- 라.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안 제5조~제6조)
- 마. 미래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7조~제14조)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교육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교육정책과, 전화 : 02-3396-4666, 팩스 : 02-3396-8632, email : namgyung@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미래교육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취학연령기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아동 및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서울미래교육지구”란(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협약 체결하여 지정한 중구 전 지역을 말한다.
4.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중구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이하 “중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미래교육지구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이하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교육의 정책 방향 및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중구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지구 사업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중구 소재 기관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초·중·고 학교장
3. 중구 관내 초·중·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
4.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구청과 중부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소관 부서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회의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한다.

②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